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43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 송재봉·김우영·강득구

권칠승 • 이수진 • 이광희

김남희 · 임호선 · 서미화
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·대학 졸업자(이하 "지역인재"라 한다)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해당 비율은 2018년 18%에서시작해 2022년 30%로 상향 조정되었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.

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,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, 해당 비율을 기존 30%에서 40%로 상향함으로써,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"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,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를 "사람(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)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을"로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"를 "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9조의2(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(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)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) ① -----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"이전공 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한 지역(이하 "이전지역"이라 한다)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) 또는 고등학교(「초·중등 교육법 |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 -----사람(이전지역에서 고 관등의 채용규모, 이전지역의 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 한다. 다만, 이전지역에서 고등 다)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 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 의 40 이상을-----. 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-----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 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 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 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